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24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41호	박성훈의원	2024.11.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5865호	정성국의원	2024.11.2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0505호	김용태의원	2025.5.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273호	박성준의원	2026.1.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6.2.19.)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에서 박성훈의원, 김용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정성국의원, 박성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 3. 24.)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별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

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각각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생략)

⑤ -----이
주배경학생등-----

-----.

⑥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들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할청

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청은 최초의 폐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폐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